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3. 7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3. 7
- 다. 상 정 일 자 : '97. 3. 18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 안 자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 나. 제안사유
 -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조문중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법 제8조 11항"을 → "법 제8조 12항"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법 제8조 6항"을 → "법 제8조 7항"으로 개정 (안 제6조 제2항 제1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 병 향)

- 본 조례 개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관용심사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조문중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남도의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27
----------	---------

제출년월일 : 1997. 3. 7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문중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제8조 11항을 → "법 제8조 12항으로 개정
(안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 "법 제8조 6항"을 → "법 제8조 7항"으로 개정
(안 제6조 제2항 제1호)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를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p> <p>1. (생략)</p> <p>2. <u>법 제8조 제11항</u>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p> <p>3. ~ 4.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위원회 회의등)</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u>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u></p> <p>2. ~ 4.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3조(기능) ① - - - - -</p> <p>-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8조 제12항</u> - - - - -</p> <p>- -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 회의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 .</p> <p>1. <u>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u> - - -</p> <p>-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